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	-----

제출년월일 : 1998. 3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5,271호, '97.2.6)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기간종료일을 광고주에게 미리 알려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 광고물의 제작,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표기가 어려운 실명제 제외 대상 광고물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주민의 안전과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1킬로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
- 공공이용 광고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시설물 기능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함.
-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준을 세분화하였음.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4. 기타 참고자료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조표 1부
- 관련조문 발췌문 1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신고사항의 기록관리”를 “신고사항 관리”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 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위원회”를 “충청북도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영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의 전화번호등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체형 문자·도형등으로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거나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가로·세로형간판
2.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3. 현수막
4. 벽보

5. 전단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중 제4조의 허가대상 또는 제5조의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

8. 법 제8조 각호의 적용배제 광고물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9. 기타 도지사가 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안의”를 “의한”으로 하며, 동항중 “이어야”를 “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표시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영 제26조”를 “①영 제26조 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6조제3항 단서에 의한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가로등주로부터 각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되고 있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4.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동조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않는 것이어야”를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애를 주는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장애를 주거나 침해를 하는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하되,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광고물의 공공 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40%이상이어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제1호중 “광고물”을 “옥외광고”로 하며, 동조제3호 “옥외광고업종사자”를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을 “의하여 실시한 안전도검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자가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은”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은자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를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로 한다.

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한다”를 “하고, 수시교육은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신고 받아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육실시에”를 “교육에”로 하며, 동항중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을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위탁받고자”를 각각 “위탁받아 실시하고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2. 옥외광고관련 법령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강사의 확보
동조제3항중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을 “위탁교육실시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중 “수탁자”를 “위탁교육실시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하며,”를

“하되,”로하고, 동조제6항중 “교육비용을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탁교육실시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등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쇄”를 “영업폐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대장”을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영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결과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 옥외광고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별표 1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별표 7의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별지 2호서식중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0조”를“11조”로 하고, 별지 4호.5호서식중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1조”를 각각“제12조“로 하며, 별지제7호.제8호서식중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3조“를 각각 ”제14조“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중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중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5조“를 각각 ”제16조“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